

**제 7 회**  
**서울고등법원 청소년 법률토론대회**  
**대 회 규 정**

**2019년**

**서울고등법원 청소년 법률토론대회 대회장**

# 목 차

## 제1장 총칙

- 1.1. 통칙
- 1.2. 대회
- 1.3. 참가자
- 1.4. 심사단

## 제2장 대회 준비

- 2.1. 참가신청
- 2.2. 제출 서면 및 영상
- 2.3. 예심

## 제3장 토론 경연

- 3.1. 통칙
- 3.2. 예선
- 3.3. 본선

## 제4장 평가

- 4.1. 예심 평가
- 4.2. 예선 및 본선 평가
- 4.3. 벌점

## 제5장 시상

## 제6장 보칙

# 제1장 총칙

## 1.1. 통칙

### 1.1.1. 목적

본 규정은 청소년의 법률소양과 토론능력을 배양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고등법원 청소년 법률토론대회에 적용할 사항을 마련함에 있다.

### 1.1.2. 대회 명칭

본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대회의 명칭은 "서울고등법원 청소년 법률토론대회"로 한다.

### 1.1.3. 대회의 주최

- 1) 대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주최하고, 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한다.
- 2) 대회장은 대회 주관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3) 집행위원회는 대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 4)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1.1.4. 대회의 구성

대회는 예선 및 본선으로 구성한다.

### 1.1.5. 대회 개최 횟수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1.1.6. 대회 규정의 적용 및 해석

- 1)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회의 성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대회장이 결정한다.
- 2) 대회장은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에 대회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1.2. 대회

### 1.2.1. 대회 방식

대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1. 예심: 예심용으로 출제된 논제에 관하여 토론개요서 및 토론동영상을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예선 진출 결정
2. 예선: 예선용으로 출제된 논제에 관하여 대진표에 따른 토너먼트 방식으로 토론을 펼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 결정
3. 본선: 본선용으로 출제된 논제에 관하여 대진표에 따른 토너먼트 방식으로 토론을 펼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

### 1.2.2. 논제

- 1) 논제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시민의 기본 법률소양과 독창적·창의적 논증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하되, 단문 형태로 제시한다.
- 2) 논제는 “예심 및 예선용”과 “본선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출제한다.
- 3) 논제는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제시한다.

## 1.3. 참가자

### 1.3.1. 참가자격 및 팀(team)의 구성

- 1) 대회에는 서울고등법원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한다.
- 2) 팀은 서로 다른 고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할 수 있다.
- 3) 팀 구성원은 신청일부터 본선 종료일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 4) 팀이 구성 요건을 결여한 경우 그 때부터 팀의 대회 출전 자격은 상실된다.

### 1.3.2. 참가자의 공정성

- 1)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대회에서 요구되는 이론적·사실적 논증을 스스로 조사·연구하여 토론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학 중인 학교 교사 등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자료조사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
  2. 토론개요서 작성 및 토론동영상 제작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
  3. 토론기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
- 2) 참가자는 대회기간 중 대회심사를 위한 심사단에 재학 고등학교, 인적 사항 및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참가자는 신의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 **1.4. 심사단**

### **1.4.1. 심사단의 구성**

- 1) 예선전(16강전) 및 본선 8강전의 심사단은 2인의 심사관으로 구성하되, 재판연구원 또는 법관 중에서 정한다.
- 2) 본선 4강전 및 결승전의 심사단은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하되, 그중 1인은 법관 중에서, 2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정한다.
- 3) 심사관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선정 또는 위촉한다.

### **1.4.2. 심사단의 독립성**

심사단은 본 대회 규정에 따라 독립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평가한다.

### **1.4.3. 심사단의 공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토론 참가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등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은 심사관이 될 수 없다.

## **제2장 대회 준비**

### **2.1. 참가신청**

#### **2.1.1. 개최 공고**

- 1) 대회장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대회 개최를 공고한다.
- 2) 예심 및 예선의 공통논제는 대회 개최 공고 시에 공지한다.

## 2.1.2. 신청

- 1) 대회에 참가하려는 팀은 개최 공고 시 지정한 신청기간 내에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의 말일이 기말고사 기간인 경우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고지하고 참가신청서만을 먼저 제출한 후 기말고사 마지막 날 자정(24:00)까지 기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2) 참가팀은 팀을 대표하고 대외 연락업무를 담당할 팀장을 선정하고, 참가신청은 팀장이 한다. 다만, 팀장은 참가신청을 팀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1.3. 참가팀에 대한 참가번호 부여

참가신청을 한 팀에게는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 2.1.4. 서면 및 영상의 제출

참가팀은 참가신청 시 '참가신청서', '학교장 추천서' 및 예심 논제에 관한 '토론개요서'와 '토론동영상'을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2. 제출 서면 및 영상

### 2.2.1. 서면의 형식

- 1) '참가신청서'와 '학교장 추천서' 및 '토론개요서'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로 제공하는 ' 글(HWP)' 파일로 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2) '참가신청서'는 참가팀명, 참가자 2인의 인적 사항(사진 포함) 및 팀장의 이름을 기재하여 ' 글(HWP)'파일로 제출하되, 파일명은 "대회차수—참가팀명—참가신청서" 순으로 붙인다(예: 6회—JUSTICE—참가신청서).
- 3) '학교장 추천서'에는 기재사항을 모두 적고 학교장 직인을 받은 후 '스캔파일' 형태로 제출하되, 파일명은 "대회차수—참가팀명—학교장 추천서" 순으로 붙인다(예: 6회—JUSTICE—학교장 추천서).
- 4) '토론개요서'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어진 논제의 쟁점 및 찬성, 반대 양측의 주장 및 근거를 기재하여 ' 글(HWP)' 파일로 제출하되, 파일명은 "대회차수—참가팀명—토론개요서" 순으로 붙인다(예: 6회—JUSTICE—토론개요서).

2. 기재사항은 글씨 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30%로 하여 작성하되, A4 1장 분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2. 영상의 형식

- 1) '토론동영상'은 참가팀 내에서 각 1명씩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누어 '토론개요서'를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하되, 파일명은 "대회차수-참가팀명-토론동영상" 순으로 붙인다(예: 6회-JUSTICE-토론동영상).
- 2) 영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다.
  - 영상 길이: 총 5분 이내
  - 제작 기기: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휴대전화 등 촬영도구 활용
  - 영상 내용: 찬성측 입안(1분) → 반대측 입안(1분) → 찬성측 교차질의(45초) → 반대측 교차질의(45초) → 찬성측 반박(45초) → 반대측 반박(45초)
  - 파일 규격: 640×480 pixel 이상/ avi, wmv, mp4 파일
  - 파일 용량: 50MB 이내

### 2.2.3. 서면 및 영상의 익명성

'토론개요서' 및 '토론동영상'에는 참가팀의 소속학교, 인적 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2.3. 예심

### 2.3.1. 필요적 예심

참가팀은 참가신청절차 종료 후 신청한 팀의 수와 관계없이 예심절차를 거친다.

### 2.3.2. 예선 진출팀의 선정 및 공고

- 1) 예심 결과 고득점 순 상위 16개 이내의 팀을 예선 진출팀으로 한다.
- 2) 집행위원회는 예선 진출팀이 확정되면 이를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함과 아울러 진출팀에게 전자문서로 개별 통지한다.

### 2.3.3. 예선 진출팀의 추가 선정

- 1) 집행위원회는 확정된 예선 진출팀 중 예선 경연에 참가하지 않는 팀이 발생한 경우, 예심 결과에 따른 차점팀 순으로 진출팀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2) 추가 선정된 팀이 확정되면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함과 아울러 해당 팀에게도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한다.

## 제3장 토론 경연

### 3.1. 통칙

#### 3.1.1. 경연 장소

토론 경연은 법정에서 진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 외에서 진행할 수 있다.

#### 3.1.2. 경연 방법

- 1) 토론은 2 : 2 팀 디베이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 2) 찬성, 반대팀 결정과 발언 순서는 매 경연 시작 전에 동전던지기를 통해 결정한다.
- 3) 토론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발언순서	발언자	방식	시간	내용
1	A팀 제1토론자	입안	3분	각 팀에서 한 명씩 찬성/반대에 해당하는 자기 팀의 입장 개진
2	B팀 제1토론자	입안	3분	
3	준비시간		1분	
4	A팀 제2토론자	교차질의	3분	상대방 논의를 허점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5	B팀 제2토론자	교차질의	3분	
6	A팀 제2토론자	반박	3분	상대방 의견에 대한 반박 논리 전개
7	B팀 제2토론자	반박	3분	
8	준비시간		1분	
9	A팀 제1토론자	교차질의	3분	상대방 논의를 허점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10	B팀 제1토론자	교차질의	3분	
11	A팀 제1토론자	요약	2분	그동안 내세운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 입장에 대한 반박을 정리하여 요약 발표
12	B팀 제1토론자	요약	2분	
13	A팀 제2토론자	최종집중	2분	이번 토론에서 왜, 어떻게 자신의 팀이 이겼는지를 설명
14	B팀 제2토론자	최종집중	2분	

- 4) 토론자는 각 토론단계별 정해진 발언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언시간이 초과된 경우 토론자는 30초의 유예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 5) 사회자는 토론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고 30초 내에 종료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알리는 방법은 토론 이전에 시연한다.
- 6) 토론자가 위 5)에 따른 촉구를 받았음에도 2분을 초과한 경우 심사단은 발언을 중단시키고 다음 단계의 토론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다.
- 7) 참가팀은 토론 시 다음 물품을 지참할 수 있고, 그밖에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휴대용 PC,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기기 등 어떠한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다.
  1. 펜, 연필, 형광펜
  2. 새 노트(토론 중 메모용), 접착식 메모지, 발언 준비 메모, 사전에 준비한 자료
  3. 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디지털 스톱워치
- 8) 참가팀은 토론 중에 언급되는 논거에 대하여 상대팀이 출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 3.1.3. 경연 시간

토론 경연 시간은 위 표와 같다. 다만 집행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경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3.1.4. 법정에서의 의사소통

- 1) 참가팀 내부에서의 의사소통이 토론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참가자는 방청인과 구두, 서면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 3.1.5. 경연의 공개

경연은 공개한다. 다만 심사단은 필요한 경우 공개 대상·범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3.1.6. 법정에서의 질서 유지 등

- 1) 법정의 질서유지는 심사단이 행한다.
- 2) 법정에서의 촬영, 녹화·녹음, 방송 등은 집행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때 촬영, 녹화·녹음·방송 행위로 경연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경연을 완료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앞서 진행되는 경연을 방청하거나 위 2)의 촬영,

녹화·녹음, 중계 결과물을 보거나 들어서는 아니 된다.

- 4) 참가자는 법정에서 심사단으로 하여금 재학 고교, 인적 사항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이름표, 옷, 책자, 파일, 언행 등의 징표를 드러내어서는 아니 된다.
- 5) 참가자, 방청인은 경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심사단은 위 4), 5)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1.7. 경연의 공정성 확보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경연을 완료하지 않은 참가자에게 앞서 진행되는 경연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참가자의 동시 집합
2. 경연을 완료하지 않은 팀에 대한 일정 장소에서의 대기 및 외부와의 연락 제한
3. 경연을 완료하지 않은 참가자의 휴대폰 등 통신수단의 보관

## 3.2. 예선

### 3.2.1. 대진표 결정 절차

- 1) 집행위원회는 예선 당일 경연 시작 전에 16강전 대진표 결정 절차를 실시한다.
- 2) 16강전 대진표 결정은 추첨에 의한다.
- 3)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팀은 대회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추첨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한 경우에는 추첨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 3.2.2. 대진표의 확정 방법 및 공고

- 1) 예선 대진표는 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대진표의 번호를 추첨함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추첨은 팀장이 하되, 팀원 또는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추첨함 대신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2) 소속학교가 동일한 참가팀이라도 서로 경연할 수 있다.
- 3) 집행위원회는 확정된 대진표를 지체 없이 참가팀들에게 공지하고 대회장소에 공고한다.

### 3.2.3. 예선의 진행

예선(16강전)은 8개의 심사단이 대진표에 따라 동시에 8경기를 심사한다.

### 3.2.4. 본선 진출팀 확정 및 대진표

- 1) 예선(16강전)에서 승리한 팀을 본선 진출팀으로 결정한다.
- 2) 예선 경연에 불참한 경우 대회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본선 대진표는 본선 진출팀이 결정되면 대진표상 자동으로 정해진다.

## 3.3. 본선

### 3.3.1. 논제 출제

집행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본선 논제 3개를 미리 공고한다.

### 3.3.2. 서면 제출

예선 진출이 확정된 팀은 본선 논제 공고 시 지정한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본선 논제 3개에 대한 '토론개요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 글(HWP)' 파일로 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다.
2. 주어진 논제별로 쟁점 및 찬성, 반대 양측의 주장 및 근거를 기재하여 한글파일로 제출하되, 파일명은 “대회차수—참가팀명—토론개요서(본선)” 순으로 붙인다[[예: 6회—JUSTICE—토론개요서(본선)].
3. 기재사항은 글씨 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30%로 하여 작성하되, 논제별로 각 A4 1장 분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토론개요서'에는 참가팀의 소속학교, 인적 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정보를 포함 시켜서는 아니 된다.

### 3.3.3. 본선의 진행

- 1) 8강전은 4개의 심사단이 대진표에 따라 동시에 4경기를 심사한다.
- 2) 4강전은 2개조로 편성하고, 1개의 심사단이 조별 순서대로 경연을 심사한다.
- 4) 결승전은 1개의 심사단이 대진표에 따라 심사한다.

### 3.3.4. 본선 논제의 배정

- 1) “8강전”과 “4강전” 및 “결승전”의 논제는 각각 다른 주제로 진행한다.
- 2) 집행위원회는 공고한 본선 논제를 “8강전용”과 “4강전용” 및 “결승전용” 논제로 각 배정하여 본선 당일 경연 시작 전에 참가팀들에게 공지한다.

### 3.3.5. 예선의 준용

기타 진행사항은 예선과 동일하다.

## 제4장 평가

### 4.1. 예심 평가

#### 4.1.1. 토론개요서 평가요소

토론개요서는 아래 각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항 목	평 가 요 소
용어 및 개념	◎ 도출된 개념 및 용어 정의가 적절한가?
논리전개	◎ 주어진 논제로부터 쟁점을 정확히 이해했는가? ◎ 제시한 쟁점이 논제와의 관련이 있고 타당한가?
문제해결	◎ 논제 및 쟁점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찬성/반대의 각 주장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 충분한 사실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창의적 사고능력	◎ 기존의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과 차별성이 있고 창의적인가?

#### 4.1.2. 토론동영상 평가요소

토론동영상은 아래 각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항 목	평 가 요 소
토론자세	◎ 언어적 표현의 명료성 - 음성(발음, 속도, 성량, 정확도, 자신감) - 어투(성숙하고 전달력 있는 어투) ◎ 발언스타일 - 적절한 메모 활용(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보고 읽어서는 안됨) - 바른 자세, 적절한 시선처리, 자연스럽게 적절한 몸동작 - 발언의 진지성과 신뢰성 ◎ 토론 예절
입안	◎ 논제의 개념, 주요용어에 대한 정의의 보편타당성 ◎ 논제의 배경, 현상, 문제에 관한 쟁점 포착 및 명확한 분석 ◎ 주장에 대한 타당한 논거의 제시 ◎ 주장에 대한 논거의 설득력, 다양성 및 참신성
교차질의	◎ 토론 쟁점의 명확화 및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에 대한 비판 ◎ 간략하고 요점이 분명한 질문,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
반박	◎ 토론 쟁점의 명확화 및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에 대한 비판 ◎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과 논리적 부조리에 대한 부각

### 4.1.3. 심사기준

예심은 토론개요서 및 토론동영상을 종합하여 아래 각 항목별로 평가한다.

1. 토론자세: 언어적 표현의 명료성, 발언스타일, 토론 예절 등
2. 내용: 논지 및 근거의 논리성, 합리성, 정확성, 유기성, 설득력 등
3. 대회 규정 및 절차 준수의 적정성

### 4.1.4. 평가 방법

- 1) 위 4.1.3.의 제1, 2는 득점 방식으로, 제3은 감점 방식으로 각 평가한다.
- 2) 평가 항목 당 배점 비율은 [별지 1-1]과 같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항목 당 배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4.1.5. 평가의 비공개

예심 평가 내용은 예선 진출팀의 선정결과 외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 4.2. 예선 및 본선 평가

### 4.2.1. 평가요소

토론 경연은 아래 각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항 목	평 가 요 소
토론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적 표현의 명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발음, 속도, 성량, 정확도, 자신감)</li> <li>- 어투(성숙하고 전달력 있는 어투)</li> </ul> </li> <li>◎ 발언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메모 활용(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보고 읽어서는 안됨)</li> <li>- 바른 자세, 적절한 시선처리, 자연스럽게 적절한 몸동작</li> <li>- 발언의 진지성과 신뢰성</li> </ul> </li> <li>◎ 토론 예절</li> </ul>
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제의 개념, 주요용어에 대한 정의의 보편타당성</li> <li>◎ 논제의 배경, 현상, 문제에 관한 쟁점 포착 및 명확한 분석</li> <li>◎ 주장에 대한 타당한 논거의 제시</li> <li>◎ 주장에 대한 논거의 설득력, 다양성 및 참신성</li> </ul>
교차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쟁점의 명확화 및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에 대한 비판</li> <li>◎ 간략하고 요점이 분명한 질문,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li> </ul>
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의 큰 흐름을 요약하면서 자기팀 주장의 타당성을 부각</li> <li>◎ 상대팀 주장의 부당성과 논리적 부조리에 대한 부각</li> </ul>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팀에 유리한 핵심적 논점의 요약 및 정리, 불리한 점 방어</li> <li>◎ 새로운 논쟁거리의 제시 금지(재반박 과정의 새로운 증거나 사실 제시는 허용)</li> </ul>
최종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자기 팀이 토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최종적으로 밝힘</li> </ul>

### 4.2.2. 심사기준

토론 경연은 아래 각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1. 토론자세: 언어적 표현의 명료성, 발언스타일, 토론 예절 등
2. 내용: 논지 및 근거의 논리성, 합리성, 정확성, 유기성, 설득력 등

3. 전략: 쟁점에 대한 이해도, 쟁점 전개 체계성, 역동적 대처능력(반박의 예리함, 답변의 정확성), 시간활용능력 등
4. 대회 규정 및 절차 준수의 적정성: 발언순서 및 발언시간 준수 등

#### 4.2.3. 평가 방법

- 1) 위 4.2.2.의 제1 내지 제3은 득점 방식으로, 제4는 감점 방식으로 각 평가한다.
- 2) 평가 항목 당 배점 비율은 [별지 1-2]와 같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항목 당 배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4.2.4. 승패 결정

- 1) 각 토론 경연별 승패 결정은 심사단이 평가 항목에 대하여 각 부여한 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고득점을 기준으로 한다.
- 2)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토론자세, 내용, 전략 순 고득점 팀을 우위로 한다.
- 3) 3, 4위는 4강전에서 패한 팀들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 4.2.4. 최우수 토론자의 결정

결승전 심사단은 합의에 의하여 결승전 토론자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1인을 최우수 토론자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4.2.5. 평가의 비공개

경연팀들에 대한 심사단의 평가 및 이를 위한 합의는 비밀로 한다. 누구든지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4.3. 벌점

#### 4.3.1. 벌점의 부과

- 1) 토론 경연 과정에서의 벌점 내역은 [별지 2-1]에 따르고, 심사단이 합의를 거쳐 부과한다.
- 2) 서면(영상)에 대한 벌점 내역은 [별지 2-2]에 따르고, 그 이외 경연 과정에서의 벌점 내역은 [별지 2-3]에 따르며,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부과한다.

#### 4.3.2. 벌점 처리 방법

별점은 심사관별로 각각 부여한 점수의 합계에서 감점한다.

#### **4.3.3. 자격 상실 효과**

경연 참가팀이 4.3.1.의 [별지 2-1], [별지 2-2], [별지 2-3]에 규정된 위반 행위로 대회 출전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팀 모두 또는 일부 구성원은 바로 다음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제5장 시상**

### **5.1. 시상 내역**

- 1) 본선 1위 팀을 시상한다.
- 2) 본선 2위 팀을 시상한다.
- 3) 본선 3위 팀을 시상한다.
- 4) 본선 4위 팀을 시상한다.
- 5) 본선 5~8위 팀을 시상한다.
- 6) 결승전에서 가장 우수한 토론을 펼친 1명을 시상한다.

## **제6장 보칙**

### **6.1. 대회를 위한 자료의 저작권 및 사용 용도의 제한**

대회를 위해 제공되거나 제출되는 모든 자료 및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서울고등법원에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6.2. 우수 토론 및 서면의 공개·귀속**

집행위원회는 대회에서 행하여진 토론경연 내용과 제출 서면 및 영상을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때 참가자는 위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6.3. 집행위원회에 대한 협력 의무**

대회 참가팀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6.4. 집행위원회와 참가 팀의 의사소통

대회 진행을 위한 집행위원회와 참가팀 사이의 공고, 통지, 서면 제출 등의 의사소통은 본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팀이 부담한다.

[별지 1-1] 평가 요소 배점 비율(예심)

구분	비율 (100%)	탁월 (81-100점)	우수 (61-80점)	보통 (41-60점)	부족 (21-40점)	미흡 (0-20점)	환산점수
① 토론자세	40%						
② 내용	60%						
③ 절차 준수의 적정	감점제						

[별지 1-2] 평가 요소 배점 비율(예선 및 본선)

구분	비율 (100%)	탁월 (81-100점)	우수 (61-80점)	보통 (41-60점)	부족 (21-40점)	미흡 (0-20점)	환산점수
① 토론자세	40%						
② 내용	40%						
③ 전략	20%						
④ 절차 준수의 적정	감점제						

[별지 2-1] 토론 경연(예선 및 본선) 과정에서의 벌점 내역

순번	규정	위반내용	벌점
1	3.1.2.	발언시간 초과: 매 30초당	2점씩 (2분 초과시 발언 중단)
2	3.1.2.	발언순서·방법 위반	2점
3	3.1.4.	부적절한 의사소통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4	3.1.6.	심사단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대한 불응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5	3.1.6.	법정에서의 익명성 조건 위반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6	3.3.2.	토론개요서 미제출(본선)	30점
7	1.3.2.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기타 공정성과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 등 재판부가 벌점을 부과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별지 2-2] 서면(영상)에 대한 벌점 내역

순번	규정	위반내용	벌점
1	2.2.1. 2.2.2. 3.3.2.	서면(영상) 형식 위반	2점
2	2.2.1. 2.2.2. 3.3.2.	서면(영상) 분량 초과	5점
3	2.2.3. 3.3.2.	익명성 조건 위반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4	3.3.2.	제출 지연(본선)	제출기한 당일 5점, 이후 24시간 경과시까지는 10점, 24시간 초과시는 미제출 처리
5	1.3.2.	외부의 부당 지원에 의한 작성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별지 2-3] 기타 경연 과정에서의 벌점 내역

순번	규정	위반내용	벌점
1	1.3.2.	익명성 조건 위반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2	1.3.2. 3.1.4.	외부의 부당 지원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3	1.3.2. 3.1.6.	불공정한 정보제공 행위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
4	3.1.7.	집합시간 위반	경연 개시 이후 10점, 그 이후 10분 초과시 5점
5	3.1.7. 6.3.	규정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지시에 대한 고의적인 불응	1건 당 3점 15점부터 자격상실
6	1.3.2.	공정성과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 등 집행위원회가 벌점을 부과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점 단위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또는 자격상실